"일자리(취업)를 찾아 드립니다.!"

부산희망리본사회적협동조합

수신자 수신처 참조
(경유)
제 목 : 2018년 부산희망리본사회적협동조합 임시총회 개최 안내

1. 조합의 발전과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2. 부산희망리본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정관 제29조「임원의 선출과 해임」제3호 및 정관 제42조[임원의 선임] 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최코자하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 시 : 2018. 7. 27(금) 17:00~
나. 장 소 : 닥터메포츠랜드 6층 교육장(부산시 연제구 거제시장로 42)
다. 의결사항 : 이사장 선출의 건, 2018년 1차 추가경정예산의 건

덧붙임 1. 임시총회 개최 안내문 1부.
2. 임시총회 위임장 1부.
3. 이사장선거 관련 안내 1부. 끝.

부산희망리본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수신처 : 부산희망리본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기안자 최종인 사무처장 공석 상임이사 정웅현 (대결) 이사장 신영우
협조 사업본부장 최문준
시행 부산희망리본-1217호(2018.07.16.) 접수 (2018. .)

우 47543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천로 89(이안빌딩 8층) / 홈페이지 http://www.workfare.or.kr
전화 051)861-8830~5 전송 051)861-8845 / bsworkfare@hanmail.net / 공개

임시총회 개최 안내문

조합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평안을 기원 드립니다. 조합의 발전과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심과 노고를 보여주신 모든 조합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정관 제29조 제3호「임원의 선출과 해임」에 의거 임시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코자 하오니 부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18년 7월 27일(금) 17시 00분

▢ 장　　소 : 닥터메포츠랜드 6층 교육장 ☎051-861-8832
(부산시 연제구 거제시장로 42)

▢ 참석대상 : 부산희망리본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 의결사항 : - 2018년 1차 추가경정의 건
- 이사장 선출의 건

※ 부득이 참석이 어려우신 조합원님께는 대리참석 위임장을 동봉하오니 위임장 작성과 함께 신분증 사본을 같이 팩스(051-861-8845), 이메일 (bsworkfare@hanmail.net), 우편 (47543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천로 89, 거제동 이안빌딩 8층 부산희망리본사회적협동조합) 중 편리하신 방법으로 회신을 부탁드리며 세부사항은 선거관리위원 최종인(051-861-8832)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임장 제출기한

- **위임장 제출 기한 : 2018년 7월 25일(수) 18:00**
- 제출목적 : 위임장 및 선거권 유효여부 확인(선거관리 위원회)

2018년 7월 16일

부산희망리본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임시총회 위임장

(조합원 위임용)

- 수 임 인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위임인과의 관계 :

본인은 상기 수임인에게 다음의 부산희망리본사회적협동조합 임시총회에 본인을 대리하여 참석하는 것과 총회에서의 의안 결의를 비롯한 이에 수반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 다 음 -

1. 총 회 : 부산희망리본사회적협동조합 임시총회
2. 일 시 : 2018년 7월 27일(금) 17:00~
3. 장 소 : 닥터메포츠랜드 6층 교육장(부산시 연제구 거제시장로 42)
4. 의 안 : - 2018년 1차 추가경정의 건
   - 이사장 선출의 건

2018년 월 일

- 위 임 인 : (인)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연 락 처 :

※ 위임장 제출시 수임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무효처리 됩니다.
※ 추가제출서류 :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1부. 끝.

부산희망리본사회적협동조합 귀중

임시총회 위임장

(가족 위임용)

- 수 임 인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위임인과의 관계 :

본인은 상기 수임인에게 다음의 부산희망리본사회적협동조합 임시총회에 본인을 대리하여 참석하는 것과 총회에서의 의안 결의를 비롯한 이에 수반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 다 음 -

1. 총 회 : 부산희망리본사회적협동조합 임시총회
2. 일 시 : 2018년 7월 27일(금) 17:00~
3. 장 소 : 닥터메포츠랜드 6층 교육장 (부산시 연제구 거제시장로 42)
4. 의 안 : - 2018년 1차 추가경정의 건
   - 이사장 선출의 건

2018년 월 일

- 위 임 인 : (인)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연 락 처 :

※위임장 제출시 수임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무효처리 됩니다.
※추가제출서류 : 1.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1부.
2. 위임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3.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조합 양식) 1부. 끝.

부산희망리본사회적협동조합 귀중

부산희망리본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선거 관련 안내

부산희망리본사회적협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사장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선거명 : 2018년 부산희망리본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선거

■ 선거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8년 7월 27일(금) 17:00 ~
- 장소 : 닥터메포츠랜드 6층 교육장(연제구 거제시장로 42)

■ 입후보 현황

- 기호1. 이사 정웅현
- 기호2. 이사 최병근

※ 첨부서류 1. 「이사장 입후보 명단」 참조.

■ 투표 진행 순서

① 입후보자 알림(선거관리위원장) ➠ ② 입후보자 정견 발표(각 후보자별 10분 이내) ➠ ③ 선거인 확인 및 투표용지 수령 ➠ ④ 기표 ➠ ⑤ 개표 ➠ ⑥ 당선자 발표(선거관리위원장)

■ 투표시 유의 사항

무효표 처리 기준

- 첨부서류 2. 「유, 무효 투표의 기준」 참조.

■ 투표 참여 관련 안내

1. 본인 참석의 경우 : 신분증
2. 위임장 제출의 경우
   ① 조합원 위임시 : 위임장, 신분증(위임인) 사본
   ② 가족 위임시 : 위임장, 주민등록등본(위임인), 신분증(수임인),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수임인)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첨부서류 3. 참조
3. 수임인(위임받는 이)의 범위
   ① 조합원 : 직원, 후원자, 자원봉사자 조합원
   ② 가족 : 조합원과 동거하는 가족으로 조합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손・비속, 형제자매의 배우자

> ☞ 관련근거
> - 조합 정관제33조【대리인이 될 자격】 전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 위임장 제출기한

- 위임장 제출 기한 : 2018년 7월 25일(수) 18:00
- 위임장 제출처 : 선거관리위원 최종인(조합 사무처) 또는 조합 기관메일(bsworkfare@daum.net)

▢ 첨부 자료
1. 이사장 입후보 명단 1부.
2. 유,무효 투표의 기준 1부.
3.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가족 위임시 첨부서류) 양식 1부. 끝.

2018년 7월 16일

부산희망리본사회적협동조합 선거관리위원장

첨부자료 1.

이사장 입후보 명단

연번	이름	직급/직함 (공고일 기준)	사진	비고
1	정웅현	부산희망리본사회적 협동조합 상임이사		이사장 입후보
2	최병근	한국유통과학연구소 부서장		이사장 입후보

부산희망리본사회적협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첨부 자료 2.

■ 유, 무효 투표의 기준

① 정규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기표한 것

(유효)

(무효)

② (무효)어느 기표란에도 표를 하지 않은 것 또는 기표란에 접선되지 않은 것

③ (무효)2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④ (무효)어느 기표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

(투표용지가 완전히 찢어져 식별할 수 없는 경우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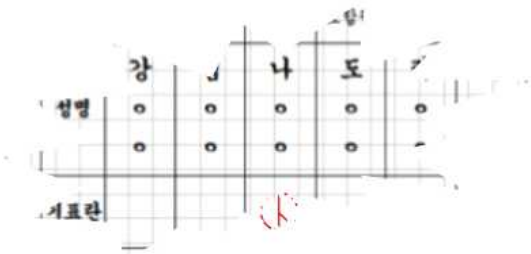

⑤ (무효) 기표를 하고 문자(좋다, 나쁘다, 공명선거 등) 또는 물형(◍, ◉, △, □ 등)을 추가로 기입한 것

⑥ (무효)기표를 하고 선거인의 성명을 기입하거나, 인장의 날인 또는 무인을 찍은 것

⑦ (무효)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좋다, 나쁘다, 공명선거 등) 또는 물형(◍, ◉, △,□ 등)을 기입한 것

⑧ (무효)기표를 하지 않고 선거인의 성명을 기입하거나, 인장의 날인 또는 무인을 찍은 것

⑨ (무효)기표하여야 할 정수를 초과하여 기표한 것